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9. 25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基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호로 2014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대학입학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포함하는 우리구 교육 전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법규화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 양성으로 앞서가는 교육도시 영등포를 조성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센터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바. 센터의 이용대상,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10조)

사. 센터의 운영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48조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448,178천원 기 편성)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구민에게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한 공간 활용,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는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운영과 예산지원 상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지원센터의 이용대상과 프로그램 이용료 또는 참가자에 대해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에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창의적 인재 육성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 특히 2011학년도부터 특목고 입시제도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변경되었고, 대학입시에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으며,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진로탐색활동의 강화가 예상되는 등 전문적인 진로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변화하는 입시전형에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법체계나 조문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66의3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안건의 경우 비용추계서가 미 첨부된 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후에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지원센터 기능의 하나인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4억 4,817만원이 기 편성되었고, 관련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근거법령 제정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 제9조(이용료의 징수)제1항 및 제2항에는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징수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사용료 징수대상 및 금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준용해서 조례상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최소한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1]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인 4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2]는 이용료 징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였고, 1개 자치구[3]는 우리구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

1) 법체처에서는 적어도 조례에 사용료·수수료의 상한이나 부과기준 등 부과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후에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권고

2) 강동구, 성북구, 경남 진주시

3) 성동구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2 청소년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